

귀하는 의료 비용이 얼마인지 설명하는 “예상 비용 견적서”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

법률에 의거하여,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보험이 없거나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게 의료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한 청구 금액의 견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
- 귀하의 비용급 항목 또는 서비스의 총 예상 비용에 대한 예상 비용 견적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의료 검사, 처방약, 장비 및 병원비와 같은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.
- 서비스가 최소 삼(3)일 전에 예약된 경우,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귀하의 의료 서비스 또는 항목의 사전 최소 일(1) 영업일에 서면으로 예상 비용 견적서를 제공받으십시오.
- 귀하의 예상 비용 견적서보다 최소 \$400 을 초과하는 금액이 청구되면 해당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예상 비용 견적서의 사본이나 사진을 저장해 두십시오.

예상 비용 견적서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www.cms.gov/nosurprises 에 방문하시거나 (800) 985-3059 로 전화해 주십시오.